

2003 년 10 월 14 일

일리노이 이민 난민 권익옹호 연합
합법적 영주권자들을 위한 정부 보조

Public Assistance for Lawful Permanent Residents (Korean version)

나는 합법적 영주권자이다- 어떤 정부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나?



1996 년 8 월 22 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법적 영주권자라면 당신은 다음의 혜택들을 받을 수 있다:

현금

- 필요가족을 위한 임시 보조(TANF)
- 사회보장 보조금(SSI), 다음의 조항에 해당될 경우:
 - 1996 년 8 월 22 일부로 사회보장 보조금을 받고 있었거나,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던 자.
 - 1996 년 8 월 22 일부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었고, 그후 맹인이나 장애인이 된 자.
 - 일을 하여 적어도 40 쿼터동안 사회보장세를 낸자.
- 일리노이주의 맹인과 장애자를 위한 보조 (AABD)
 - 당신이 65 세 이상의 연령이고, 사회보장국 (SSA) 에서 “비장애인”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.
- 일리노이주 사회보장 보조 신청기간동안 과도기에 주는 보조 (TA)
- 사회보장 은퇴연금

의료

- 의료보조 (Medicaid)
- 아동 의료보조 (Kidcare)

음식

- 후드 스탬프를 받으려면,
 - 5 년 동안 법적 영주권자로 있었던 자
 - 18 세 미만의 자
 - 장애관련 보조 수혜자
 - 65 세 이상의 연령으로 1996 년 8 월 22 일부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한자
- 부녀자, 유아, 아동 음식 보조 프로그램 (WIC)
- 학교 점심 식사와 아침 식사 급식 보조

교육

- 초, 중, 고 12 년 간의 교육 (K-12)
- 타이틀 IV 연방 정부 장학금과 학자금 대부
- 헤드 스타트

1996 년 8 월 22 일 이나 그 이후에 미국에 입국한 법적 영주권자라면 당신은 다음의 혜택들을 받을 수 있다:

현금

- 필요가족을 위한 임시 보조(TANF) - 5 년 동안 자격을 갖춘 이민자* 여야 함.
- 사회보장 보조금(SSI)
 - 일을 하여 적어도 40 쿼터동안 사회보장세를 냈거나 5 년동안 자격을 갖춘 이민자* 에게만 해당됨.

- 일리노이주의 맹인과 장애자를 위한 보조 (AABD) – 현재 사회보장 보조금(SSI)을 받는 자에게만 해당됨.
- 일리노이주 사회보장 보조 신청기간동안 과도기에 주는 보조 (TA) -- 5년 동안 자격을 갖춘 이민자*여야 함.
- 사회보장 은퇴연금

의료

- 의료보조 (Medicaid) -- 5년 동안 자격을 갖춘 이민자*여야 함.
- 아동 의료보조 (Kidcare)

음식

- 후드 스탬프를 받으려면,
 - 5년 동안 법적 영주권자*로 있었던 자
 - 18세 미만의 자
 - 장애관련 보조 수혜자
- 부녀자, 유아, 아동 음식 보조 프로그램 (WIC)
- 학교 점심 식사와 아침 식사 급식 보조

교육

- 초, 중, 고 12년 간의 교육 (K-12)
- 타이틀 IV 연방 정부 장학금과 학자금 대부
- 헤드 스타트

* 일리노이주의 자격을 갖춘 이민자에는 다음의 경우가 해당된다. 합법적 영주권자, 피난민자, 망명자, 미국인과 아시아인의 혼혈인, 하이티/큐바에서 온 입국자, 밀입국 행위의 피해자, 흐몽이나 하일랜드 라오스인, 특정한 아메리칸 인디안 국가에서 온 자, 출국/추방을 보류받은 자; 특정한 상황하에 구타로 피해 입은 배우자나 그 자녀, 1980년 4월 1일 이전에 최소 일년간의 가석방을 받은자나조건부 입국이 허가된 자.

만일 정부 보조를 받을 경우 시민권 신청할 때 지장이 있을 것인가?

아니다! 이민법은 자격이 되어서 정부 보조를 받는 법적 영주권자에게 시민권을 거부할 수 없다.

정부 보조를 받으면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수 있는데 그 점은 단지 다음의 조항에 해당된다:

- 정부보조를 신청할 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을 경우 (전체소득을 밝히지 않았거나 식구를 더 보태서 보고했거나 이민신분에 대해 거짓말을 했을 경우); 혹은
- 법적인 영주권 신청시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을 경우 (다시 말하면 장애자이거나 혹은 다른 조건의 지장이 있어서 경제적인 자립이 불가능하여 현금보조를 받을 수 있게 만들었을 경우). 현금보조 프로그램은 필요가족을 위한 임시보조 (TANF), 사회보장 보조 (SSI), 혹은 장기 양로원 치료를 위한 의료보조를 포함한다. 신청시 사실대로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법적 신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.

만일 자격이 되면 시민권신청 여부를 걱정하지 않고 당신은 의료보조 (Medicaid), 아동 의료보조 (KidCare), 사회보장 보조 (SSI), 필요가족을 위한 임시보조 (TANF), 식품표 (Food Stamps), 맹인과 장애자를 위한 보조 (AABD), 그리고 다른 연방정부, 주 정부 혹은 지방정부 보조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.

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일리노이 이민 난민 권익 옹호 연합에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.
(312) 332-7360; 팩스: (312) 332-7044; 이메일: info@icirr.org